

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(0306)

제정 2023. 1. 18. 규정 제671호 개정 2023. 8. 22. 규정 제68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담당 및 처리부서) ①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구성·운영 등 전반적인 청원 관련 업무는 청원총괄담당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이 담당한다.
②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(이하 “처리부서”라 한다)에서 처리한다.
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심의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맡는다.
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원총괄 담당부서장과 감사담당 부서장이 맡는다. 청원총괄 담당부서장이 없는 경우 총무담당 부서장이 맡는다.
④ 위촉직 위원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

어야 한다.

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원업무 담당부장이 맡는다.

제5조(위원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사유가 발생하고 위촉해제가 필요하다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
4. 「청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

를 밝힌 경우

6.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8조(심의회 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회 개최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 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

있다.

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11조(자료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의회 결과 통보)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비밀준수 의무)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<23.1.1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<23.8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
시행한다.

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요구부서						
청원사항	청원명					
	청원인 성명		청원인 생년월일			
	청원 요지					
요구사유						
검토의견	<i>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</i>					
경기주택도시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.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(서명 또는 인)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원심의회 귀중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■ [별지 제2호서식]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	건
---	---

○ 검토의견

○ 의견서 서명

구분	직위	성명	의견		서명
			찬성	반대	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
-----	--

○ 심 의 의 결

○ 의결서 서명

구분	직위	성명	의견		서명
			찬성	반대	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